사례 ⦁해운업 영위 일반법인 ⦁해운소득：300,000,000 ⦁비해운소득：100,000,000(감면비율 50%) ⦁산출세액：60,000,000 ⇦ (300,000,000＋100,000,000)×세율 ⦁감면후 세액：52,500,000 ⇦ [60,000,000－(60,000,000×100/400×50%)] ⦁최저한세：55,000,000(①＋②) ① 100,000,000×10%＝10,000,000 ② 60,000,000×300/400＝45,000,000 ⦁세무조정 대상：최저한세 미달세액 2,500,000(55,000,000－52,500,000) 상당액을 감면세액에서 적용배제 합니다.)